

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
구성 결의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10. 19.
제안자 : 강병수 의원
(찬성자 35인)

1. 주 문

-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벌어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(채무지급유예) 선언의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시 불건전한 재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『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인천시의 불건전한 재정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시 지방재정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함.
- 또한, 현재 주요 지방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책임 있는 경영의식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함.
- 이에 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부채 및 상환계획,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의 불안감 해소 등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.

3.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6개월
 - ※단,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
- 구성인원 : 9인 이내
- 활동범위
 - 지방채 분석, 중장기 재정대책 검토 등 **[기획행정위]**
 - 인천도시개발공사, 인천메트로, 인천교통공사 관련 단위사업 등 **[건설교통위]**
 - 인천관광공사 관련 단위사업 등 **[문화복지위]**
 - 경제자유구역청 단위사업(외자유치 중점) 등 **[산업위]**
 - SPC 사업 등 재정분야 단위사업 전반 등

4. 세부활동계획

- 특별위원회에서 수립·의결

5.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

관련법규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 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6조 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 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